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복수 운영〉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05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10.

다. 회 부 일 : 2026.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투표관리 사무를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한 현행법에서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현행법으로 규정하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 및 사인 날인 대신 인쇄 날인이 된 도장이 사용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선거 및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투표관리관 1인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처리해야 할 투표용지의 수가 많은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 1인이 도장 날인, 투표용지 교부 및 관리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투표 불신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여,
투표관리 사무 등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

Ⅲ. 검토의견

현행법은 투표구·사전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을 여러 명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② ~ ④ (생략)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 ----- ----- ----- 수인을, ----- ----- 수인을 각각 --.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의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수행함.¹⁾

1)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58조(사전투표) ③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 투표관리관의 업무 관련 투표용지 이미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국회의원 선거 (OOO선거구)			
1	갑 당	○○○	
2	을 당	△△△	
3	병 당	X X X	
4	정 당	□ □ □	
5	무 소속	☆☆☆	

후보자 기호

소속 정당(무소속)

투표관리자 확인란

투표관리관

중앙선거1부

김광영인

기표란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칸에 맞게 기표

일련번호

사전투표 용지에는 일련번호 대신 1차원 바코드 인쇄

No. 0000000

1차원 바코드(예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참알바와 함께 알아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2024.1.18.

그런데 투표관리관 1명이 사인 날인, 투표용지 교부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처리해야 할 투표용지의 수가 많은 일부 지역의 투표소의 경우 업무가 과중하여 원활한 투표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음.

또한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58조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

서는 사전투표 업무처리를 위해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²⁾

이에 개정안은 투표구·사전투표소에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하 “투표관리관등”이라 함)을 복수로 둘 수 있도록 하여 투표관리 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게 되는 경우에도 업무분담 등을 통해 원활한 투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³⁾ 그 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투표관리관등을 복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전제될 필요가 있고, 복수의 책임자 운영으로 인해 업무분장, 책임 소재와 관련한 혼선 등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제도 운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현장의 인적·물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④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8조(사전투표) ③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③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3) 이와 관련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216632,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또한 개정안이 의도하는 투표관리관 증원이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도장 날인 및 인쇄날인 논란과도 연계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된 복수의 개정안들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논의결과를 함께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투표용지의 청인 및 도장날인의 인쇄날인 관련 개정안들의 비교 》

신동욱의원안 (의안번호 2208832)	최수진의원안 (의안번호 2208858)	조정훈의원안 (의안번호 2216632)	윤준병의원안 (의안번호 2216546)
- 본투표용지의 청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함 -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규정 신설	-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규정 신설	-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규정 신설 - 규칙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 각 의안원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투표 사무 기피 심화 등에 따른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인력 추가 확보의 어려움, 투표관리관별 인영 차이에 따른 투표용지 효력 논란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